

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HDC알짜배당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효력발생일 : 2021.01.29.
3. 주요 정정사항 : 운용역변경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<생략>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<생략>	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<현행과 같음>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<현행과 같음>
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(C-P2 수익증권, C-P2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
<신설>	<부칙> 제1조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 : 운용역변경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운용전문인력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홍호덕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강병희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운용전문인력변경	-	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홍호덕→박정훈) -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박정훈→강병희)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홍호덕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강병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	- 투자대상 ⑦ 집합투자증권 :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<u>수익증권</u> 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	-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⑦ 집합투자증권 :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<u>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, 법 제9조제21

			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
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및 기준가 격 적용기준 나. 환매 (5) 수익증권의 일 부환매		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 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 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 권을 환매하고,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.	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 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나. 집합투자재산 의 평가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	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 하되 평가일 현재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 가액으로 평가합니다. ① 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 시가</u> ② 장내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에서 공표하는 가격. 다만, 평가일의 공 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 에 의하여 평가 ⑥ 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 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. 다만, 상장 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 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</u> 로 평가	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 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합니다. ① 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 시가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 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 ② 장내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에서 공표하는 가격(해외 시장에서 거 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.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⑥ 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 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. 다만, 상장 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 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(해외 시장 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 날의 최종시가)</u> 로 평가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3)자산보관·관리 보고서	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	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,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 기간의 종료 등 ...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 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 부하여야 합니다. <이하 생략>	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,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 기간의 종료 등 ...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 여야 합니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

[간이투자설명서] : 운용역 변경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-----	------	------	------

	운용전문인력변경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홍호덕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	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박정훈</u> 부책임운용전문인력 : <u>강병희</u>
--	----------	---	---

<끝>.